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지향 의원 외18명

나. 의안번호 : 제2802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9.

### 2. 제안사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증진계획의 시행 의무를 명시하여 사업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추가하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태조사의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반영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나.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체계 구축 현황 및 교통이용편의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함(안 제7조 제2의 2, 5의2 신설).
- 다.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의무화함(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2025. 6. 7.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 있는 주요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동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
- (실태조사) 실태조사 항목으로 ①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체계 구축 현황 및 ②법 17조에 따른 교통사업자의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현황 추가 /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차례는 전수조사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시행)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시행’의 의무 규정

---

1) 교통정책과-9003(2025. 6. 9.)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시장의 시행 의무와 관련 실태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서울시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행 의무(안 제5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7조2)에서 특별시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5조3)에서 시장이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

-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시행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동 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시장의 실행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법 제4조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또한, 도로 및 교통계획 변경 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 실태조사 관련(안 제7조)

- 현행 조례 제7조5)에서는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필요한 실태조사 기초자료에 대한 각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 제25조6)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사항 중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과 교통약자법 제 17조제1항7)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에 대한 조사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조례개정안 제 7조제1항에서 이를 새로이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한차례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법 제25조제3항8)은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방법 등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안 제8조)

- 동 개정조례안 제8조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실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 의무도 함께 추가하여 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증진계획·실태조사·시행계획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